

정현지 변호사 (법무법인 바른)

폐업신고 후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사 태 장기화로 국가경제부터 가정경제까지 어 려움이 가득합니다. 그중에서도 사적 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폐 업까지 몰린 자영업자분들이 속출하고 있지 요. 최근 방역 패스(백신 접종·음성 확인제) 제도까지 시행돼 상인분들의 상황이 단기간 에 나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

폐업까지 결심했다면 상인 당사자가 가장 어렵겠으나 투자자와 거래처 등 해당 상인의 채권자 또한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져 난감합 니다. 이때 채무자는 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 청할 수도 있겠지만, 채권자가 몇 안 되고 어 느 정도의 자력이 있는 상태라면 굳이 시간 과 비용을 들여 도산제도를 이용하기보다 개 인적인 협의를 통해 채무정리를 할 수도 있습 니다. 채권자도 당장 전액을 회수하기 어렵다면 채무자로부터 적당한 액수로 채권액을 확정 하는 처분문서 등을 받아두고, 시간이 지나 채 무자의 사정이 나아졌을 때 변제받는 것도 유 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.

폐업을 결심하거나 폐업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새로 공증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등 채권에 관한 협의가이루어지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 채무자에게 자력이 생겼을 때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하게 되는데요. 이때 채무자의 주된 항변 중 하나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.

일반적인 민사채권(이와 달리 단기시효를 가진 채권은 법정되어 있음)의 소멸시효 기간 은 10년,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. 채권의 성질 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데, 상인이 폐업신고 후 한 행위로 발생한 채권이 민사채권인지 상 사채권인지가 문제됩니다. 최근 유사한 사안 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(2021, 12, 10, 선고 2020다295359 판결).

마트 운영자 甲은 자신의 채권자가 마트 내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집행되자,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한 집행 취소 결정을 받아 곧마트에 대해 폐업신고를 했습니다. 한편 甲은 마트를 운영하면서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적이 있는데, 폐업신고 후 즈에게 채권액과 변제기를 다시 정해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.

乙은 위 공정증서에 따른 금전채권을 피보 전 권리로 하여 위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 청 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이에 기해 추심금 수령을 완료했고, 이후 甲 을 상대로 공정증서상 채권 금액에서 수령금 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습니다. 위 소송에서 甲은 공정증서상 채권이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 다고 주장했으나, 원심은 "乙의 甲에 대한 위 공정증서상 대여금 채권에 민법상 10년의 소 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."는 이유로 이를 배 척했습니다.

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먼저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고, 그 상행위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

다고 설명하면서 "상인이 기본적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청산 사 무나 잔무 처리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행위 역시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 위로 볼 수 있다."고 판시하였습니다.

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甲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한 대응 및 폐업에 따른 청산 사무 또는 잔무를 처리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

즉 상인이 폐업신고를 한 뒤 폐업에 따른 청산 사무 또는 잔무를 처리하는 취지의 행위 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, 그로 인하여 발 생한 채권은 적어도 일방(채무자)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 한다는 것입니다.

이처럼 상인인 채무자가 영업을 종료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뒤라도 그에 대한 채권이 상사 채권으로서 5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 되는 사례가 있으니, 이러한 거래관계에 놓인 이들은 채권 행사 시 유의하기 바랍니다.

(출처/세계일보)